

「주영 더팰리스지분」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공급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시기 바랍니다.

▣ 공 급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63-1번지 외 2필지

▣ 공 급 규 모 : 아파트 3개동 총 3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 최고 39층

▣ 입주 예정 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 급 대 상

| 주택 구분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계약면적(m ²) | | | |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
|----------|-----------------------|----------|--------------------------|---------|----------|------------------|----------|-------|
| | | | 세대별공급면적 | | |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등)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 | |
| 민영 주택 | 59.6859A | 59A | 59.6859 | 27.7958 | 87.4817 | 30.6064 | 118.0881 | 34 |
| | 59.6859B | 59B | 59.6859 | 27.7628 | 87.4487 | 30.6064 | 118.0551 | 34 |
| | 59.6268C | 59C | 59.6268 | 28.4959 | 88.1227 | 30.5761 | 118.6988 | 62 |
| | 73.1577A | 73A | 73.1577 | 32.2899 | 105.4476 | 37.5146 | 142.9622 | 136 |
| | 73.4064B | 73B | 73.4064 | 32.8858 | 106.2922 | 37.6422 | 143.9344 | 34 |
| | 84.9907 | 84 | 84.9907 | 38.4677 | 123.4584 | 43.5825 | 167.0409 | 22 |
| | 공급세대 합계 | | | | | | | 322 |

▣ 기관별 배정세대 (괄호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단위 : 세대)

| 주택형 | 59A | 59B | 59C | 73A | 73B | 84 | 합계 |
|--------------|------|-----|------|------|------|----|------|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1(1) | - | 1(1) | 2(2) | 1(1) | - | 5(5) |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1(1) | - | - | 1(1) | - | - | 2(2) |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 - | 1(1) | 1(1) | - | - | 2(2) |
| 합계 | 2(2) | - | 2(2) | 4(4) | 1(1) | - | 9(9)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22. 05. 26.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사무실 055)649-7575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 건본주택 개관 | 2022. 05. 27.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2번지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2022. 06. 07. 예정 (09:00 ~ 1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2. 06. 15.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개별통지 불가 및 신청자 직접 확인) |

※ 20.03.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 | |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 | | | | |
| 청약 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부산광역시</th> <th>울산광역시</th> <th>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구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구분 | 내용 |
|-----------|---|
| 당첨자 선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기관에서 자체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IV 기타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신청한 경우 및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 자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건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